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목 차

1부 (PART ONE)	3
1조. 용어 및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3
2조. 소개 (INTRODUCTION)	11
3조. 목적 (OBJECTIVES)	11
4조. 기준 및 제재 (CRITERIA & SANCTIONS)	12
5조. 절차 (PROCEDURE)	13
2부 (PART TWO)	15
6조. 참가자격 부여 주체 (LICENSOR)	15
7조. 참가자격 신청자 및 참가자격 (LICENSE APPLICANT AND LICENSE)	19
8조. 주요평가절차 (CORE PROCESS)	23
3부 (PART THREE)	26
9조. 스포츠 기준 (SPORTING CRITERIA)	26
10조. 시설 기준 (INFRASTRUCTURE CRITERIA)	32
11조. 인사 및 행정 기준 (PERSONNEL & ADMINISTRATION CRITERIA)	36
12조. 법적 기준 (LEGAL CRITERIA)	42
13조. 재무 기준 (FINANCIAL CRITERIA)	44
14조. 최종 조항 (FINAL PROVISIONS)	48
4부 (PART FOUR)	49
별첨 1. AFC 클럽대회 참가를 위한 예외정책	49
(EXCEPTIONS POLICY FOR AFC CLUB COMPETITIONS)	
별첨 2. K리그 참가를 위한 예외정책	51
(EXCEPTIONS POLICY FOR K LEAGUE)	
별첨 3. AFC 클럽대회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적용	52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AFC CLUB COMPETITIONS)	
별첨 4. K리그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적용	53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K LEAGUE)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2016년판)을 기초로 한 AFC 클럽대회 및 K리그 대회참가자격 부여에 관한 규정

1부 (PART ONE)

1조 (Article 1) : 용어 및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참고 : 단수형 용어는 복수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용어	정의
회계보고 정책 Accounting Policies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법인에 의해 채택된 구체적인 절차, 기준, 협정, 규칙, 실행을 통칭함.
AFC	아시아축구연맹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 시스템 또는 CLAS AFC Club Licensing Administration System or "CLAS"	라이선싱 발급자 및 라이선싱 신청자가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 및 매뉴얼에 명시된 절차를 완료할 지원하기 위해 AFC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 (http://clas.afc-link.com)
AFC 클럽 라이선싱 매뉴얼 AFC Club Licensing Manual	AFC 클럽라이선싱 규정을 서술한 실무서. AFC 클럽라이선싱 규정의 조항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인 이유에 대한 해설 뿐만 아니라 조항의 표준 해석과 평가절차를 라이선싱 발급자와 라이선싱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	5개 유형의 기준 및 주요평가절차로 구성된 규정.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은 반드시 '국내 클럽 라이선싱 규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FC 클럽 대회 AFC Club Competitions	AFC 챔피언스 리그, AFC 컵
AFC 경기장 규정 AFC Stadium Regulation	AFC 클럽대회 경기 개최를 위한 경기장과 관련하여 클럽이 충족해야 할 필요기준을 서술한 실무서
가맹 회원 Affiliated Member	협회 및/또는 연맹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법적 및/또는 상업적 실체
사전 합의 (감사)절차 Agreed-Upon Procedures (AUP)	합의된 절차에 따라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는 감사와 감사대상 그리고 합법적인 제3자가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보고하는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 후,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사전 합의를 본 당사자 사이에만 통용되어야 하며, 이는 절차 시행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용어	정의
무형자산의 상각 Amortisation	내용연수를 초과한 무형 자산의 감가 상각 금액을 추정하는 체계적인 할당. 선수의 등록(영업)을 위한 직접 자본화 비용이 그 예이며, 내용연수는 계약 기간을 의미.
연례 재무제표 Annual financial statements	법정연도 말에 준비하는 재무제표로 통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료나 표 등을 의미.
관계기업 Associate	합명회사(Partnership)와 같은 비법인 실체(Unincorporated entity)를 포함한 법인체. 투자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와 합작 투자는 포함되지 않음.
평가 절차 Assessment process	주요평가절차(Core Process)를 참조
회계 감사 Audit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목적은 재무제표가 준비되었는지, 모든 자료가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재무보고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한 회계사의 검증을 받기 위함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 또는 '모든 자료들이 믿을만 하고 잘 제출되었음' 등의 회계사의 의견이 첨부될 수 있으며, 재무와 기타 정보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역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감사 업무를 통해 회계감사관은 제출된 정보가 잘못 기술되지 않았음에 대해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높은 수준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는 회계감사보고서 내 타당한 확인을 통해 긍정적으로 표현된다.
예산 Budget	법인이 향후 실행하거나 예정된 사업의 추진 일정을 포함한 재무 정보
CAS	스위스 로잔 소재의 스포츠 중재 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로 알려진 독립 중재 재판소
현금과 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현금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과 요구불 예금으로 구성된다.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작은 단기 고유동성 투자자금을 의미한다.
클럽 Club	협회 및/또는 연맹이 주최하는 리그 또는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클럽 또는 아마추어 클럽
연결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기업집단으로 묶어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계약 선수 Contracted Player	클럽과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선수
통제 Control	기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법인의 재정 및 운영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지배력
주요평가절차 Core Process	대회 참가자격 발급주체가 참가자격을 발급하는 근거로 규정에서 명시된 기준과 일치함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

용어	정의
기준 Criteria / Criterion	5개의 카테고리(스포츠, 인프라, 인사행정, 법률 및 재무)로 분류되어, A./B./C (필수, 권고 기준) 3개의 등급로 분리되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이행해야 할 필요요건
AFC 클럽 라이선스 발급 리스트 제출 마감일 Deadline for submission of the list of licensed applicants to AFC	대회 참가자격 발급 주체(라이선스 발급자)가 국내 의사결정 기구로부터 승인받은 라이선스 신청자 명단을 AFC로 제출해야 하는 날짜. 해당 날짜는 매년 AFC가 결정하여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공지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 Depreciable amount	유형자산의 취득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잔존가치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끝난 후 유형자산을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처분대가에서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뺀 금액
선수 등록의 취득으로 인한 직접 비용 Direct costs of acquiring a player's registration	선수 등록의 취득으로 인해 제3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내부 발전 비용 및 기타 비용은 제외하며 해당 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등록을 보장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이적료 b) 이적료에 대한 세금 등 추가 부담금 (해당 시) c) 선수 등록의 취득에 대한 기타 직접 비용 (예, 클럽에 서비스를 제공한 대리인에 대한 비용, 법률자문료, 국내 규정에 따른 유스 선수의 훈련보상비 및 이적과 관련된 기타 직접 비용)
피고용인의 이익 Employee benefits	피고용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대가
주요 경제적 중요 사건 또는 조건 Event or condition of major economic importance	직전 반기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건 또는 상태가 보고 실체의 재무제표에 자료로 고려되거나 보고 실체의 운영, 재무상태 및 순자산의 결과에 대해 다른 (다양한) 발표가 요구될 경우 해당 사건 또는 조건은 경제적 중요성을 가진다.
FIFA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회계연도 Financial year	법정 마감일까지의 회계보고기간으로 반드시 1년 단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중간기간은 아니다.
미래재무정보 Future financial information	해당 법인에 향후 발생 가능한 사건 또는 행동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 효과에 대한 정보.
계속기업 Going concern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계속 운영되어 성장중인 기업으로 고려되는 보고실체. 이는 해당 실체가 고의로 청산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법과 규정에 따라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요청받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그룹 Group	모회사와 모든 자회사. 모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가진 법인체. 자회사는 타 법인(모회사)의 통제를 받는 합작투자의 형태와 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용어	정의
역사적 재무 정보 Historic financial information	법인과 관련된 과거 사건의 재무 영향을 분석한 정보. 역사적 재무정보는 라이선스 결정 전 재무 실적과 상황에 대한 자료로 사용된다.
독립 회계감사관 Independent auditor	IFAC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회계감사관. 추가적인 정보는 www.ifac.org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란다. '회계감사관'이라는 용어는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 혹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	선수 영입(등록)과 같은 물질 실체는 없지만 인식은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중간재무제표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중간기간의 재무제표 원본 또는 요약재무제표 세트가 포함된 재무보고서
반기 Interim period	전체 회계기간 보다는 짧은 중간 회계보고기간
중개인 Intermediary	고용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선수 또는 클럽을 대표하여 협상을 하거나 이적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클럽을 대표하여 협상을 유료 또는 무료로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채택한 기준과 해석으로 IFRS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a) 국제재무보고기준 b) 국제회계기준 c)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IC) 또는 과거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SIC)가 해석한 내용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ISA)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ISA")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The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IAASB)가 발행하는 국제회계감사기준과 동일한 기준. 회계 감사관들이 적용하는 역사적 회계정보 보고의 기준과 같음. IAASB에 따르면 기준의 목적은 재무제표 감사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회계감사관, 정부, 은행감독기관, 증권감독기관 및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공인하는 높은 수준의 회계감사 기준 및 안내를 제정하는 것이다. IASASB 및 ISA에 관한 추가정보는 www.ifac.org 를 방문하면 된다.
검토업무국제기준 (ISRE)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view Engagements (ISRE)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발행하는 역사적재무정보 검토에 적용되는 기준. 최신 ISRE는 www.ifac.org 에서 확인 가능하다.
감사관련서비스 국제기준 (ISRS)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lated Services (ISRS)	정보에 대한 사전 합의 (감사)절차 신청을 포함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발행한 계약 표준. 최신 ISRS는 www.ifac.org 에서 확인 가능하다.
합작투자 Joint venture	둘 혹은 그 이상의 단체(투자자)가 계약상의 협의를 통해 착수하는 경제적인 활동. 기타 법인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합자 회사의 법인 형태이지만 공동 경제 활동을 포함하지는 않음.

용어	정의
KFA	대한축구협회 (Korea Football Association) 또는 협회. 대내외적으로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경기단체
한국프로축구연맹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한국 프로축구리그인 K리그를 주관하는 경기단체로 'K리그' 또는 '연맹'으로 불리기도 한다.
K리그 K LEAGUE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상위 프로축구리그로 K리그1(클래식, 1부리그)와 K리그2(챌린지, 2부리그)로 구성되어 있다.
K리그1(클래식) K LEAGUE1(CLASSIC)	K리그 1부리그 명칭
K리그2(챌린지) K LEAGUE2(CHALLENGE)	K리그 2부리그 명칭
K리그 클럽라이선싱 매뉴얼 (매뉴얼) K LEAGUE Club Licensing Manual (Manual)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을 서술한 실무서. 라이선스 발급자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규정의 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의미 전달과 평가의 진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 (규정) K LEAGUE Club Licensing Regulations (Regulations)	국내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서술한 실무서. AFC 클럽 라이선싱 제도 뿐만 아니라 국내적 특성 및 목적을 반영한 모든 최소 필수요건을 포함한다.
시즌 (Sporting) Season	1군팀이 참가하는 리그의 대회 일정에 따른 리그 첫 번째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의 기간
라이선스 발급 시즌 Season to be Licensed	'라이선싱 시즌' 참조
라이선스 Licence	K리그1(클래식), K리그2(챌린지) 또는 AFC 클럽 대회(해당 시) 참가를 위해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최소 필수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연맹이 발급하는 증명서
라이선스 신청자 Licence applicant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국내 및 국제 클럽대회를 참가하는 축구팀에 대한 전적이고 고유한 책임을 갖는 법인체
라이선스 소지자 Licensee	라이선스 발급자를 통해 라이선스를 승인받은 라이선스 신청자
CLA Licensing administration	라이선스 발급자 내 클럽라이선싱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 또는 직원
라이선싱 회람 (회람) Licensing Circular (Circular)	클럽 라이선싱 절차 시작 시, 해당 일정, 마감일, 주요평가절차 및 기타 관련정보를 통보하기 위해 연맹이 각 구단에게 발송하는 문서
라이선싱 주기 Licensing cycle	주요평가절차(Core Process) 참조
라이선싱 절차 Licensing process	라이선스가 발급되기까지의 절차

용어	정의
라이선싱 시즌 Licensing season	라이선스를 승인 받은 기간. 라이선스 발급자가 라이선싱 결정 목록의 AFC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동일 마감일 까지 지속된다.
라이선스 발급자 Licensor	국내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운영하고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주체
라이선싱 결정 목록 List of licensing decisions	AFC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국내 의사결정기구가 라이선싱 인허가 절차를 통해 라이선스 신청자가 라이선스를 발급 또는 미발급 된것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 라이선스 발급자가 AFC에 제출하는 목록
경영 (인사) Management (personnel)	경영은 재무제표와 기타 재무관련 자료의 준비와 공정한 보고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다른 용어는 특정 관할권 내 법적체계에 따라 적절히 처리된다. 예를 들어, 특정 관할권 내에서 '적절한 참고'를 한다는 것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책임자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자료와 구체성 Material or Materiality	자료 혹은 정보의 누락이나 잘못된 진술은 자료 수집상에 일어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기반을 둔 사용자의 경제적 결정에 개별적 또는 총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자료의 누락이나 잘못된 진술의 평가 혹은 본질에 따라 구체성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전후 사정 혹은 환경에 따라 판단 됨. 자료의 평가 혹은 본질 또는 둘 다에 따라 사실이 결정될 수도 있음.
May	시행하기 위해 누군가가 판단해야 할 문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
Must or shall	시행하기 위해 누군가가 해야 할 의무 (의무사항)
국내회계실무 National accounting practice	한 국가 내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회계 및 보고 실무와 공표
모회사 Parent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한 법인
회수가능액 Recoverable amount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높은 금액. '순공정가치'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회원 Registered member	국내법과 국가 협회 규정을 따라야 하는 국가별 협회의 회원과 가맹 리그의 모든 법인체

용어	정의
관계단체/자 Related party	<p>관계단체/자는 법인과 관련. 만약,</p> <p>a) 직간접적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중개인을 포함한다면, 해당 관계단체는</p> <p>i) 조정 혹은 조정을 받는 법인의 일반적 지배 아래에 있음 (모 회사, 자회사, 종속기업을 포함)</p> <p>ii) 법인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실제</p> <p>iii) 법인에 대한 공동지배권을 가진 실제</p> <p>b) 관계단체는 법인의 관계사.</p> <p>c) 법인이 투자자일 때 관계단체는 합작 투자를 의미</p> <p>d) 관계단체/자는 모회사나 법인의 핵심 관계자를 의미</p> <p>e) 관계단체/자는 a)항과 d)항에 관련된 모든 개별 가족의 핵심 관계자를 의미</p> <p>f) 관계단체/자는 개별적/공동 조정 혹은 확실한 영향을 가지는 법인을 의미. 또한 직간접적으로 d)항 혹은 e)항 관련 개인과 관계가 있는 특정 법인에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음.</p> <p>g) 관계단체/자는 법인 고용의 이해관계에 대한 이전의 고용 이해 계획을 의미하거나 특정 법인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의 관련 단체를 의미 하기도 함</p>
보고 실체 (독립체) Reporting entity/entities	본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단체, 기업 또는 그룹은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해당 법으로 명시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리뷰 Review	재무정보 리뷰의 목적은 회계감사관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임. 리뷰를 통해 회계감사관이 인식된 재무 정보의 틀에 맞추어 재무정보가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음. 리뷰는 회계 감사와는 대조적으로 재무정보가 잘못된 정보로 구성되었다는 보증을 얻기 위한 절차는 아님. 리뷰는 질문을 만들어 회계와 재무 문제들에 대해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다른 리뷰 절차에 대한 점검을 함. 리뷰는 회계감사관으로부터의 재무정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증거는 없음.
시즌 (Sporting) Season	1군팀 참가 리그의 대회일정에 따라 리그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경기에 끝나는 기간
라이선스 발급 시즌 Season to be licensed	'라이선싱 시즌' 참조
중대한 변화 Significant change	사전에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제출된 서류를 자료로 고려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라이선싱 서류의 제출 전에 발생한 경우, 다른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어지는 사건을 의미한다
중대한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	법인의 재무 및 운영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영향력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정책을 넘어서는 조정이나 공동 관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용어	정의
경기장 Stadium	대회의 경기가 열리는 장소로 모든 인접 소유물 및 시설물(예를 들어 사무실, 응접구역, 미디어센터 및 출입증 발급 센터) 등이 함께 포함된다.
법정마감일 Statutory closing date	보고 법인의 매 회계연도 마감일
후속사건 Subsequent events	라이선싱 결정 후 발생하는 사건 또는 상태
자회사 Subsidiary	(모기업으로 알려진) 다른 법인에 의해 통제되는 파트너십과 같은 비법인을 포함한 독립체
부속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공시 및 회계정보에 대한 최소 필요요건을 불충족 시, 재무제표와 더불어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제출되는 재무 정보 부속정보는 재무제표와 일치하는 회계 및 회계 정책을 기초로 준비되어야 한다. 재무정보는 연간재무제표의 준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출처로부터 발췌되어야 한다.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와 일치하거나 맞추어 진 상태로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훈련시설 Training facilities	클럽의 등록된 선수들이 축구 훈련 및 유소년 발전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본 규정 내, 남성형 용어의 사용은 여성형 용어와 동일한 것으로 적용된다

2조 (Article 2) : 소개 -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시스템

(INTRODUCTION - K LEAGUE CLUB LICENSING SYSTEM)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이하 ‘규정’)은 K리그1(클래식), K리그2(챌린지) 및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한 국내 클럽 라이선싱 규정이다.

2.1 본 규정은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 및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 주최 하에 진행되는 클럽대회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적용된다.

2.2 본 규정은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제도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관할하며, 특히 다음을 정의한다.

- a) 클럽이 이행해야 하는 최소 자격기준
- b) K리그1(클래식), K리그2(챌린지) 및 AFC 클럽대회 참가를 위해 필요한 대회참가 자격(이하 ‘라이선스’) 및 라이선스 신청자(License Applicant)
- c)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한 신청 절차의 일부로서 연맹이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클럽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스포츠, 시설, 인적 및 행정, 법적, 재무 기준

2.3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은 규정 내 기술된 기준 및 평가의 표준 해석을 제공하는 K리그 클럽 라이선싱 매뉴얼을 통해 보충 된다.

3조 (Article 3) : 클럽 라이선싱 시스템의 목적 (OBJECTIVES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3.1 본 규정은 다음 목적을 가진다:

- a) K리그1(클래식), K리그2(챌린지) 및 AFC 클럽 대회의 청렴성 및 신뢰성 보호
- b) K리그의 재정적, 스포츠적, 법적, 인적, 행정적 및 시설적 관련 기준에 대해 벤치마킹 통한 클럽의 발전을 가능토록 함;
- c) K리그 내 축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기준에 있어 지속적인 향상 촉진과 각 클럽의 유소년 훈련 및 관리에 지속적인 우선순위 부여;
- d) 클럽 내 조직 및 관리 수준의 향상 ;
- e) 클럽의 재정능력 개선, 신뢰성 및 투명성의 향상 및 채권자 보호에 대한 필요한 중요성 부여;
- f)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안전한 경기장 시설 제공을 위한 클럽의 스포츠 제반시설 개선

4조 (Article 4) : 기준 및 징계 (CRITERIA & SANCTIONS)

4.1 기준 (CRITERIA)

4.1.1. 기준의 단계적 차이 (CRITERIA GRADATION)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라이선스 신청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기준은 다음 5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 a) 스포츠 기준 (Sporting criteria);
- b) 시설 기준 (Infrastructure criteria);
- c) 인사 및 행정 기준 (Personnel and Administrative criteria);
- d) 법무 기준 (Legal criteria);
- e) 재무 기준 (Financial criteria)

4.1.2. 규정 내 기술된 기준은 다음 세 등급으로 나누어 진다. 해당 분류는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과 부합한다.

4.1.3.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내 기술된 기준은 A,B,C로 등급이 나뉘어 진다.

- a) **“A” 기준 - “의무사항” (A Criteria - Mandatory) :**
라이선스 신청자가 “A” 기준을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K리그 및/또는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 취득이 제한된다.
- b) **“B” 기준 - “의무사항” (B Criteria - Mandatory) :**
라이선스 신청자가 “B”기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라이선스 발급자로부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하지만, K리그 및/또는 AFC 클럽 대항전에 참가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발급은 가능하다.
- c) **“C” 기준 - “권고사항” (C Criteria - Best Practice) :**
“C”기준은 모범사례로 권고된다. “C”기준의 불이행은 라이선스 미발급 또는 특정 징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일부 “C”기준은 향후 단계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다.

4.1.4 라이선스 발급자(Licensor)는 AFC 클럽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AFC가 설정한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최소 필수요건(minimum requirements)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 발급자는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4.2 제재 (SANCTIONS)

4.2.1 클럽자격심의위원회(First Instance Body, FIB - 1심기구, 6.5조 참조) 또는 클럽자격재심위원회 (Appeals Body, AB, 항소 기구 - 6.6조 참조)는 본 규정의 위반(위조 서류의 제출, 마감일 미준수, 개인에 대한 제재, 1심 기구 또는 클럽 CLA에 대한 미협조 등과 같은) 및 “A”기준이나 “B”기준 불충족 등에 대해 제재를 설정할 수 있다.

- a) 경고 (Warning)
- b) 견책 (Reprimand)
- c) 벌금 (Fine)
- d) 출전정지 (Match suspension)

- e) 축구관련 활동 참가 금지 (Ban on taking part in any football-related activity)
- f) 기준 이행을 위한 마감일 연장 (Extended deadline to fulfill criteria)
- g) 특정 마감일까지 기준 이행 (Obligation to fulfill criteria by certain deadline)
- h) 승점 감점 (Deduction of points)
- i) 정직 (Suspension of personnel)
- j) 연맹 내 해당 기구에 문제 보고
(Reports of issues to appropriate bodies within th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 k) 보증서 및 이행각서 제출 (Obligation to submit guarantees and undertaking)
- l) 대회로부터 퇴출 (Exclusion from competitions)
- m) 하위 디비전 강등 (Relegation to a lower division)
- n) 지원금 / 상금 지급 보류 (Withhold grants / prize money)
- o) 추가적인 세부 재무정보 청구 (Seek more financial details)
- p) 무관중 경기 (Playing a match without spectators)
- q) 중립경기 (Playing a match on neutral territory)
- r) 특정 경기장 내 경기개최 금지 (Ban on playing in a particular stadium)
- s) 라이선스 재검토 (Licence review)
- t) 라이선스 취소 (Licence withdrawal)
- u) 선수이적 금지 (Transfer ban)

4.2.2 “B”기준 불이행 시, 징계는 아래와 같다;

- a) 각 기준의 최초 위반 시, 서면으로 경고가 주어진다.;
- b) 위반 정도에 따라 지원금/수당 지급 보류

4.2.3 라이선싱 규정 위반 사안에 따라 연맹 ‘상벌’ 규정이 적용된다. (예, 위조 서류 제출, 개인에 대한 제재 등)

5조 (Article 5) : 절차 (PROCEDURE)

5.1.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운영 (Management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5.1.1. 연맹은 클럽 라이선싱 제도, 해당 행정부서 및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5.1.2. 절차는 클럽의 제출 및 자체 증빙과 CLA(Club Licensing Administration, 이하 ‘CLA’) 및 CLA가 임명한 외부기관에 의한 검토, 평가 및 권고로 구성된다.

5.2 라이선싱 절차 (Licensing Process)

5.2.1. K리그 및/또는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해, 클럽은 라이선싱 발급 시즌(Season to be Licensed)의 직전 시즌에 라이선싱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예, 2019년 대회 참가를 위해 2018년 라이선싱 절차 수행)

5.2.2. 클럽은 K리그1(클래식), K리그2(챌린지) 및 AFC 클럽 대회(해당 시) 참가를 위해 자신의 라이선싱을 취득/갱신하기 위해 매 시즌 라이선싱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5.2.3. 라이선싱 절차의 시작 시점에 연맹은 관련 절차, 주요평가절차(Core Process)의 단계 및 시간계획 등을 클럽에 통보하는 라이선싱 회람을 발송해야 한다.

5.3 발전 (Development)

5.3.1. 클럽 라이선싱 시스템은 지속적인 개선을 규정화하기 위해 고안된 점진적인 제도이다.

5.3.2. 해당 클럽 라이선싱 기구는 내부 심사를 통해 현재 규정 및/또는 매뉴얼(해당 시) 내 기준 검토 및 개정을 연맹에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3.3. 현재 규정 및/또는 매뉴얼(해당 시)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 시, 수시로 재검토 및 개정될 수 있다.

5.4 수시 현장점검 (Spot Checks)

5.4.1. FIFA, AFC, 협회, 연맹 및/또는 상급 단체가 임명한 기관/대행사는 라이선싱 발급자와 함께 라이선싱 발급자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결정을 통해 라이선싱이 적절하게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선싱 신청자/라이선싱 소지자를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4.2. FIFA, AFC, 협회, 연맹 및/또는 상급 단체가 임명한 기관/대행사는 본 규정 내 명시된 최소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선싱 발급자와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4.3. FIFA, AFC, 협회, 연맹 및/또는 상급 단체가 임명한 기관/대행사는 본 규정 내 정의된 기준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선싱 소지자를 수시로 현장점검할 수 있다.

5.4.4. 본 규정에 명시된 최소 필수요건의 위반은 위반의 속성 및 정도에 따라 AFC의 권고나 결정에 의해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5.5 예외 정책 (EXCEPTIONS POLICY)

5.5.1. AFC 행정부는 규정 내 마련된 ‘부록1’에 따라 AFC 클럽 대회에 있어 본 규정 내 일부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5.2. 연맹은 규정 내 마련된 ‘부록2’에 따라 K리그에 있어 본 규정 내 일부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부 (PART TWO)

6조 (Article 6) : 라이선스 발급자 (LICENSOR)

6.1 원칙 (PRINCIPLE)

6.1.1. 연맹을 통한 기구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을 행한다. :

- a) 본 규정, 예외 정책, 위임 요청 및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다른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 b)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1심 기구(FIB) 및 항소 기구(AB);
- c)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실행할 CLA(CLA);
- d)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발전을 위해 연맹 사무국을 지원할 목적으로 라이선스 발급자가 위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실무단이 구성될 수 있다. (예, 법률자문단, 재정자문단 등);
- e)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과 관련된 의무 위반 및 불시 점검 결과에 따른 일부 결정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AFC 사법기구, AFC 징계 규정 및 해당 AFC 대회규정이 적용된다.

6.2 정의 (DEFINITION)

6.2.1. 연맹은 라이선스 발급자이다.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는 AFC의 승인을 바탕으로 연맹에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위임한다.

6.2.2. 라이선스 발급자는 라이선싱 제도를 관리하며, 라이선싱 기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결정한다.

6.2.3. 특히, 라이선스 발급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최소 2개 이상의 의사결정기구를 조직;
- b) 적절한 CLA를 조직;
- c) 제재 목록 마련;
- d) 주요평가절차의 정의;
- e) 라이선스 발급여부 결정.

6.2.4. 동등대우 & 비밀보장 (EQUAL TREATMENT & CONFIDENTIALITY)

6.2.4.1. 라이선스 발급자는 주요평가절차 진행 중 모든 라이선스 신청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6.2.4.2. 라이선스 발급자는 라이선싱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정보에 대해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완전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라이선싱 과정에 관여하거나 라이선스 발급자를 통해 임명된 자는 과업을 담당하기 전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6.3 클럽 라이선스 행정부 (CLUB LICENSING ADMINISTRATION, CLA)

6.3.1. 라이선스 발급자는 라이선싱 절차의 운영을 대행하는 적절한 행정기구를 마련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배정해야 한다.

6.3.2.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이하 'CLA')의 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클럽라이선싱 시스템의 준비, 실행 및 향후 발전;
- b) AFC 클럽라이선싱 행정 시스템(CLAS) 접속 및 운영;
- c) 주요평가절차 내 필요한 마감일 설정;
- d)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 e) 시즌 중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지원, 자문 및 모니터링;
- f) 라이선싱 결정 이후 발생된 사건으로 라이선스 소지자가 사전에 제출한 정보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AFC에 통보 (AFC 클럽 대회에만 적용);
- g) 다른 AFC 회원협회와 AFC 내부 라이선싱 부서와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업무연락을 담당

6.3.3. 최소 1명 이상의 담당자 또는 외부 회계자문은 반드시 회계분야 경력 및 적절한 국가기관(예, 국내 무역협회 등)이 인정하는 회계감사 수료증(학위)을 보유 하거나 상기 분야와 관련된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자격 인정).

6.3.4. CLA는 라이선스 소지자가 발급된 라이선스에 대한 요건 유지를 실패한 경우, 해당 사례를 FIB에 보고한다. CLA는 협회 또는 연맹 내 타 부서에 라이선스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6.3.5. CLA는 라이선스 신청자로부터 설명, 추가 서류 및 정보 요청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추가 증빙자료 및 해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CLA의 재량이다.

6.3.6. CLA는 AFC의 마감일과 K리그 개막일을 고려하여 연간 클럽 라이선싱 주요평가절차에 대한 일정을 수립한다.

6.3.7. CLA는 라이선스 발급, 제재, 라이선스 취소 및 기타 라이선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FIB에 권고할 수 있다.

6.3.8. CLA 및 CLA가 요청한 기타 자문위원은 FIB 및 AB의 회의에 참석한다. 본 회의에서 CLA의 역할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며, 해당 인원은 투표권이 없다.

6.3.9. 라이선싱 절차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라이선싱 절차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안유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6.4 의사결정기구 (DECISION-MAKING BODY)

6.4.1. 라이선스 발급자는 다음의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 a) 클럽자격심의위원회 (1심 기구 / First Instance Body, FIB)
- b) 클럽자격재심위원회 (항소 기구 / Appeals Body, AB)

6.4.2. 의사결정기구는 반드시 각각의 독립된 기구이어야 한다. 해당 기구는 연맹의 CLA로 부터 행정 지원을 받게 된다.

6.4.3. 의사결정기구는 클럽에 라이선스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규정 내 명시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6.5 클럽자격심의위원회 (1심 기구 / First Instance Body, FIB)

6.5.1.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이하 'FIB')는 라이선스 발급자가 지정한 기한에 맞추어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라이선스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라이선싱 매니저의 신청을 기반으로 라이선스의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6.5.2. 라이선스 발급 거부 시, 해당 결정은 사유를 포함해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6.5.3 라이선스 발급자는 FIB의 정족수를 결정한다. 최소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동수일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6.5.4. 라이선싱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a) 서면으로 작성;
- b) 사유를 서술;
- c) 마감일/기한 포함;
- d) 기밀유지 준수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투명성 제공 (예, 재무에 관한 측면);
- e) 재심 요청에 대한 권리에 대한 진술 포함

6.5.5.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및/또는 K리그 클럽 라이선싱 매뉴얼에 명시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의 미제출 및/또는 라이선스 발급자가 결정한 마감일 이후의 서류 제출에 따른 라이선스 발급 거부 시, FIB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결정이며, 항소 사항이 아니다.

6.6 클럽자격재심위원회 (항소 기구 / Appeals Body, AB)

6.6.1. 클럽자격재심위원회(이하 'AB')는 서면으로 제출된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라이선스 승인 또는 철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6.6.2. 라이선스 발급자는 항소 기구의 정족수를 결정한다. 최소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동수일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6.6.3. 항소는 아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 a) FIB로부터 라이선스 발급이 거부된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 b) FIB에 의해 라이선스가 취소된 라이선스 소지자; 또는
- c) 라이선스 발급자를 대표하는 라이선싱 매니저

6.6.4. AB는 FIB의 결정을 기초로 이를 결정하며,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라이선스 발급자가 FIB 이전까지 제공한 증거만을 참고한다. 항소 서면요청서는 수립된 마감일 내 제출되어야 한다.

6.6.4.1. 추가적인 증거 및 서류를 AB에 제출할 수 없다.

6.6.5. 라이선스 발급 거부 시, 해당 결정은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6.6.6. K리그 참가와 관련된 라이선스의 경우, AB의 결정은 최종이며 항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6.6.7. AFC 클럽 대회 참가와 관련된 경우, AB의 결정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CAS가 최종 항소심의기구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AFC 클럽대회 출전과 관련된 마감기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7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

(REQUIREMENTS OF MEMBERS OF THE DECISION MAKING BODIES)

6.7.1. 라이선스 발급자는 FIB 및 AB의 위원을 임명한다. 해당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며, 재임명이 가능하다.

6.7.2.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은 AFC 정관에 따라 선출 또는 지명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공명정대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b) 라이선스 신청자로부터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이해관계 상충 시 활동을 삼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이 라이선스 신청자의 구성원, 주주, 사업 파트너, 후원자 또는 자문위원 등 이어서는 안된다.
- c) 라이선싱 매니저와 병행해서는 안된다.
- d) 라이선스 발급자의 사법적 기구와 동시에 소속되어서는 안된다.
- e) 최소 1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적절한 국가전문기관이 인증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회계감사관을 포함해야 한다.

6.7.3. 항소기구의 구성원은 협회 및 연맹의 규정된 의사결정기구 또는 위원회 소속 행정직을 겸임해서는 안된다.

6.7.4.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은 CLA 구성원과 동일한 수준(6.3.9조 참조)의 엄격한 기밀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라이선스 발급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위원은 이를 서면으로 수락해야 한다.

- 6.7.5. 상기 자격요건에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발급자는 전문적인 수준의 역할 수행을 위해 라이선싱 기구의 구성원 들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학문적, 전문적 훈련 및 경력 등)
- 6.7.6. 의사결정기구(예, 집행 마감일 등)는 자연적 정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최소 다음을 정의해야 한다.
- a) 마감일 (예, 제출 마감일 등)
 - b) 평등대우의 원칙 보호
 - c) 대표자 (법정 대표자)
 - d) 의사반영의 권리 (예, 집회, 청문회 등)
 - e) 공식언어 (해당 시)
 - f) 요청 시한 (예, 산출, 준수, 중단, 연장 등)
 - g) 항소 시한
 - h) 항소의 효과 (예, 미지연 효과)
 - i) 요청 증거의 유형
 - j) 입증 책임 (예, 라이선스 신청자는 입증 책임을 가진다)
 - k) 결정 (예, 논리적인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 l) 항의사유
 - m) 답변의 내용 및 형식
 - n) 심의/청문회
 - o) 진행비용 / 관리수수료 / 보증금

Article 7 : 라이선스 신청자 및 라이선스 (LICENSE APPLICANT AND LICENSE)

7.1 소개 (INTRODUCTION)

- 7.1.1. 본 장을 통해 K리그와 AFC 클럽대회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와 라이선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법 인체에 대해 규정한다.
- 7.1.2.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법인은 라이선스 신청자(license applicant)로 부른다. 라이선스 신청자가 라이선스 발급자(Licenser)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시, 라이선스 발급자 소지자(Licensee)가 된다.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오직 라이선스 신청자만을 다룬다.

7.2 라이선스 신청자 원칙 (PRINCIPLE OF LICENCE APPLICANT)

- 7.2.1. 라이선스 신청자는 축구클럽이어야 한다. 즉, 국내의 대회에 참가하는 축구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체이어야 한다.:-
- a) 국내법, 협회 및/또는 연맹 정관에 따라 협회 및 연맹의 회원으로 가맹된 법인체 (이하 '회원')
 - b) 회원과 계약적 관계를 가진 실체 (이후 축구기업)
- 7.2.2. AFC 클럽 대회 :
-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회원 자격 및/또는 계약적 관계가 라이선싱 절차의 시작 시점부터 최소 2년 이상 연속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스포츠 성적에 대한 자격을 용이하게 하거나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클럽의 법적형태 또는 기업구조의 변경(본사, 사명, 클럽 색상 또는 다른 구단/기업간 소유 지분의 이전 포함)은 회원자격 또는 본 조항의 의미에 포함되는 계약적 관계의 중단으로 간주된다.
- 7.2.3. 회원 또는 축구기업만이 라이선스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다. 자연인은 라이선스 신청 및 취득이 불가하다.
- 7.2.4. 라이선스 신청자는 국내의 축구대회 참가 및 클럽 라이선싱 기준 이행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
- 7.2.5. 라이선스 신청자는 특히 다음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 a) 모든 선수를 협회 및 가맹리그에 등록하며, 프로선수의 경우 회원 또는 축구기업과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FIFA, 협회 및 연맹의 관련 규정에 의거함);
 - b) 선수에 대한 계약적 또는 법적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보상(보수)을 지불하고, 모든 입장수입은 회원 또는 축구기업의 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 c) 라이선스 신청자는 국내의 축구대회를 참가하는 축구팀을 등록된 선수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
 - d) 본 규정 내 스포츠, 시설, 인사 및 행정, 법무, 재무 기준과 관련된 의무와 같은 라이선싱 의무를 이행할 증빙하는 것 관련된 모든 필요 정보 및/또는 서류를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제공한다.;
 - e) 스포츠, 시설, 인사 및 행정, 법무 및 재무 기준에 대한 보고 법인체 관련된 정보를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라이선스 발급자는 각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해 지정된 보고 법인체가 클럽 라이선싱 목적에 적절하게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f) 라이선싱 서류 제출 후 기존 제출된 정보가 상당한 변화가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 이를 즉시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g)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서류는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 시스템 (<https://clas.afc-link.com>)을 통해 공시된 주요평가절차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h)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 시스템(CLAS) 사용 시, 연맹에 서류 제출은 라이선스 신청자가 법적으로 승인한 자에 한해 클럽 담당자의 계정으로 접근이 허용된다.

7.3 라이선스 (LICENSE)

7.3.1. 원칙 (PRINCIPLE)

7.3.1.1. 라이선스는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의 조항에 따라 발급되며, 다음의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

- a) AFC 라이선스(AFC License) - AFC 클럽 대회 및 K리그 참가 자격
- b) K리그 라이선스(K LEAGUE License) - K리그 참가 자격

7.3.1.2. 라이선스 발급자는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라이선스 신청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신청 안내를 발표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클럽(라이선스 신청자)은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제출을 통해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싱 제도 내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임을 신고해야 한다.

7.3.1.3. 본 규정 내 명시된 기준을 라이선스 발급자와 AFC가 지정한 마감일 내 이행을 완료하고, 클럽의 대회성적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클럽만이 다음 시즌 K리그 및/또는 AFC 클럽 대회를 참가할 수 있다. 해당 대회 규정 내 기타 다른 요건 역시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7.3.1.4. 라이선스는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만료된다.:-

- a) 라이선스가 발급된 시즌이 끝난 시점(Licensing Season); 또는
- b) 해당 디비전의 해체 시.

7.3.1.5. 라이선스는 양도될 수 없다.

7.3.1.6. 다음의 경우, 라이선스는 시즌 중 AFC 또는 라이선스 발급자의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 a)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일부 조건 불충족 시; 또는
- b) 라이선스 소지자가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내 의무사항을 위반 시.

7.3.1.7. 라이선스 취소가 예상되는 즉시, 연맹은 이를 즉시 AFC 클럽CLA에 통보해야 한다.

7.3.1.8. 라이선스가 취소된 라이선스 신청자와 관련된 현재 AFC 대회로 부터의 참가 배제에 대한 결정은 AFC 사법기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7.3.1.9. AFC는 적용가능한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 및 AFC 징계 규정(AFC Disciplinary Code)을 통해 클럽을 제재하거나 향후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연맹은 적용가능한 관련 규정 및 상벌 규정을 통해 클럽을 제재하거나 향후 K리그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7.4 AFC 클럽 대회 참가 (ADMISSION TO AFC CLUB COMPETITION)

7.4.1. 원칙 (PRINCIPLE)

7.4.1.1. 라이선스 신청자는 AFC 클럽 대회 참가 승인을 위해 해당 AFC 클럽 대회 규정에 따른 모든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4.1.2. 해당 참가승인 절차는 AFC 고유의 관할권 및 해당 권한을 가진 기구(AFC Entry Control Body, etc.)의 관할이다.

7.4.1.3. AFC 내 권한을 가진 기구가 라이선싱 신청자의 AFC 클럽 대회 참가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7.4.1.4. 중재 재판소로서 스위스 로잔 소재의 스포츠 중재 재판소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된 결정은 AFC의 정관상 AFC 관할 대상이다.

7.4.2.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신청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Entering AFC Club Competitions)

7.4.2.1. 스포츠 성적을 통해 AFC 클럽대회 참가 자격을 갖춘 클럽이 라이선싱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거나, 클럽이 최상위리그 보다 낮은 디비전에 속해있어 최상위리그 클럽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낮거나 상응하지 않는 라이선싱 절차를 진행한 경우, 협회 또는 연맹은 클럽을 대신하여 '별첨3'에 따라 클럽라이선싱시스템의 임시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7.4.2.2. 실례로, K리그에 속하지 않은 클럽이 국내 중요 컵대회(예, FA컵)를 우승한 경우, 임시신청을 해당 클럽에 적용할 수 있다.

7.4.2.3. 해당 임시신청에 따라, AFC는 해당 AFC 클럽 대회 참가에 대한 임시신청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은 해당 신청자 및 대상 시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7.5 K리그 참가 (ADMISSION TO K LEAGUE)

7.5.1. 원칙 (PRINCIPLE)

7.5.1.1. 원칙적으로, 모든 클럽은 K리그 참가 승인을 받기 이전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신청자는 해당 K리그 규정에 따른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5.1.2. 상기 7.5.1.1조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라이선스 취득에 실패한 클럽에 대한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클럽은 벌금이나 승점 감점을 포함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7.6 K리그 참가 : 신규 가맹 클럽에 대한 클럽 라이선싱

(ADMISSION TO K LEAGUE : CLUB LICENSING FOR NEWLY AFFILIATED CLUBS)

7.6.1. 원칙 (PRINCIPLE)

7.6.1.1. 연맹 회원으로 신규 가입한(또는 가입 예정인) 클럽은 별첨4에 따라 반드시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8조 (Article 8) : 주요평가절차 (CORE PROCESS)

8.1 소개 (INTRODUCTION)

본 장은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평가 절차(이후 '주요평가절차')를 정의한다.

8.1.1. 원칙 (PRINCIPLE)

8.1.1.1. 주요평가절차는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을 관리하기 위해 라이선스 발급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또한 주요평가절차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본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품질 기준을 라이선스 발급자와 AFC에 증명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8.1.1.2. 주요평가절차는 본 규정에 명시된 기준(스포츠 기준, 시설 기준, 인사 및 행정 기준, 법무 기준 및 재무 기준)의 증명 절차와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관리에 대해 정의한다.

8.1.1.3. AFC 클럽 대회 :

주요평가절차는 라이선스 발급자가 규정한 시기에 시작하며, AFC가 지정한 마감일까지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에게 라이선싱 결정에 대한 목록(List of licensing decisions)을 제출하며 종료된다.

8.1.1.4. K리그 :

주요평가절차는 라이선스 발급자가 규정한 시기에 시작하며, 라이선스 발급자가 지정한 마감일 까지 각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라이선싱 결정을 통보하며 종료된다.

8.1.1.5. 주요평가절차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 a) 라이선스 발급자가 필요와 조직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싱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돕고;
- b) AFC 클럽 대회 및 K리그 참가에 필요한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 라이선스 발급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요건에 동의하며;
- c) 독립기구에 의해 클럽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 d) 의사결정기구가 라이선스 발급자의 CLA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8.1.1.6. 주요평가절차는 다음을 최소 주요 단계로 포함하여 구성된다. :-

- a)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라이선싱 서류를 배포;
- b) 라이선싱 기준 준수를 증빙하기 위한 라이선싱 서류 제출 및 해당 제출 마감일;
- c) CLA에 의한 제출 서류의 평가 (예, 담당자 검토, 실사, 현장 방문);
- d)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서면 진술서 제출;
- e)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의 평가;
- f) AFC 클럽CLA에 라이선싱 결정 리스트의 제출.

8.1.1.7. 라이선스 발급자는 AFC가 통보한 마감일 이내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신청자 명단을 AFC에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신청자 명단의 AFC 제출은 늦어도 라이선스 발급 시점의 직전연도 10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8.1.1.8. 라이선스 발급에 필요한 기준 이행과 작성된 서약서 및 서류의 진실성의 증빙은 클럽 / 라이선스 신청자의 의무이며, 모든 입증 책임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있다.

8.1.1.9. 마감 및 제출 일자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CLA는 모든 마감일 및 제출일을 결정할 책임을 가진다. 지정된 마감일 이내 CLA에 적절한 시점에 모든 원본 서류, 증빙 서류 및 필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라이선스 신청자의 책임이다. 제출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수신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마감기한 내 CLA가 양식, 서류 및 증빙자료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8.1.1.10. 주요평가절차는 명확성을 목적으로 아래 3단계로 구분된다. :-

- a) 신청 단계(Application phase) : 라이선스 신청 단계 및 의사결정절차로 이어지는 단계를 포함 ;
- b) 의사결정 단계(Decision making phase : 가능한 항소를 포함한 세부 의사결정 절차 ;
- c) 준수 단계(Compliance phase) : 전체 라이선스 기간 동안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명시.

8.2 과정 및 절차 (PROCESS & PROCEDURES)

8.2.1. CLA는 AFC 클럽 대회 참가 승인을 위해 AFC가 지정한 마감일을 고려하여 주요평가절차의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8.2.2. 라이선스 발급자는 규정과 매뉴얼을 기초로 평가방식을 정의해야 한다.

8.2.3. 연간 일정의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계	요건	마감일
1	CLA는 클럽에게 라이선스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연맹에 제출할 것을 요청	회람을 통한 별도 통보
2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신청 의사를 라이선싱 매니저에게 통보 (첨부된 양식 사용)	
3	CLA는 K리그 클럽 라이선싱 템플릿을 제작하여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배포	
4	4월 14일부터 8월 17일 사이, 라이선스 신청자는 각 기준에 대한 해당 증명자료가 포함된 서류(설문지, 템플릿 등)를 작성 완료하여,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 시스템 (https://clas.afc-link.com)을 통해서 제출. 출력물, 인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출된 서류는 불인정	
5	CLA는 전체 기준에 대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각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 제출 또는 기존 제출된 서류의 수정 등을 권고하는 서면 피드백을 준비	
6	라이선스 신청자는 CLA의 권고에 따른 서류 재제출	
7	라이선싱 행정부 실사 진행	
8	CLA는 K리그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FIB에 제출	
9	FIB는 K리그 라이선스 신청을 검토하고 AFC 및/또는 K리그 라이선스 발급/미발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서면 결정문을 각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발송	
10	FIB 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한 라이선스 신청자는 FIB 결정문 수신 7일 이내 사유를 명시하여 CLA에 서면으로 항소	
11	AB는 항소를 검토하고 항소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림. 항소인에게 서면 결정문 발송	
12	CLA는 AFC에 라이선스 발급 및 발급거부 결과를 통보	

8.3 평가 절차 (ASSESSMENT PROCEDURE)

라이선스 발급자는 규정 및 매뉴얼을 기초로 평가방식을 정의해야 한다.

8.4 언어 (LANGUAGES)

규정 내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신청자가 각 기준에 대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 정보 및 증빙 자료는 국문 및/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기타 언어는 영문으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법률번역을 완료할 책임을 갖는다.

3부 (PART THREE)

9조 (Article 9) : 스포츠 기준 (SPORTING CRITERIA)

9.1 목적 (OBJECTIVES)

스포츠 기준의 목적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다음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 a) 우수한 선수들의 기량 발전 및 양성의 지속적 유지;
- b) 명확한 경로를 통한 점진적 발전 구조 수립;
- c) 클럽 중심, 양질의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 d) 축구관련 교육을 통한 엘리트 선수에 대한 기술 교육 및 유소년 선수에 대한 보충 학습교육 제공;
- e) 모든 선수 대상의 종합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f) 자격을 갖춘 인력을 통한 엘리트 축구선수의 기량발전 및 체계적인 관리.

9.2 기준 (CRITERIA)

S.01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선수육성구조 PLAYER DEVELOPMENT STRUCTURES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명확한 선수육성구조를 마련해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클럽 철학, 플레이 스타일 및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개요; b) 연령대별 선수단 구성; c) 명확하고 점진적인 선수 진로 (육성 경로); d) 선수육성구조의 마련,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자원의 충분한 할당. <p>2. 본 구조 내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1군 이하 최소 3개 이상의 연령대별 선수단 ; b) 상기 3개 선수단 내 15세 이하 및 18세 이하 선수단을 의무 편성; c) 각 선수단은 최소 18명 이상의 선수로 구성하여 팀이 연령대별 대회 또는 공개대회 참가를 위한 팀이 준비되어야 한다; d) 모든 선수단과 선수들은 라이선스 소지자의 법인체 또는 산하의 법인체 소속이어야 한다.; e) 각 선수단 내 구체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별 전문가(지도자,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영양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p>3. 각 선수단은 국가 및 지역 협회가 주최하는 공식대회에 출전해야 한다.</p> <p>4. 각 연령대별 대회는 협회 또는 연맹 주최하는 국내대회이어야 한다. 이는 유소년 리그, 2군 리그 또는 국내/지역 성인리그 등이 포함된다.</p>		

S.01 기준 관련 클럽 및 협회에 대한 추가 정보

클럽과 함께 협회는 선수, 지도자, 심판 및 행정가 등이 발전에 필요한 경험 및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및 지역 수준의 유소년 대회를 기획하고 주최해야 한다.

확대된 유소년 리그 대회는 최상위 수준의 경기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경기 수 이상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연령대별 대회를 통해 상기의 관련 인원들에 대한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진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연령대별 대회는 권역별 유소년 대회, AFC U16, U19 예선 및 본선 뿐만 아니라 FIFA 17세 이하, 20세 이하 대회 (U-17 & U-20 월드컵) 등과 나란히 분류되어 주최되어야 한다.

세부사항은 FIFA 및 AFC 대회 일정을 참고하면 된다.

국내대회는 앞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추가적인 국제 대회와 최종적으로 FIFA 유소년 월드컵을 대비해 국내 유스팀의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

적절한 연령대별 대회의 준비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모든 회원 협회는 대회에 내제된 발전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는 것이 적극 권장된다. 각 선수는 반드시 국내 및/또는 지역별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S.02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선수육성프로그램 YOUTH DEVELOPMENT PROGRAMMES (YDP)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p> <p>a) 클럽 중심, 양질의 유소년 발전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p> <p>b) 유능한 선수들을 위한 자격을 갖춘 코칭스태프 지원;</p> <p>c) 축구 관련 교육 지원 제공;</p> <p>d) 유소년 선수 대상의 보충학습 지원 제공.</p> <p>2. 유소년 발전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p> <p>a) 클럽의 목표;</p> <p>b) 클럽의 선수육성철학;</p> <p>c)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재능있는 선수들의 기량발전을 위해 해당 담당자를 통해 관리, 전담 및 검토 되는 각기 다른 연령대별 축구 교육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 전술 · 신체 · 정신 <p>d) 비축구 교육 프로그램;</p> <p>e) 선수의 성과 평가를 위한 검토 및 피드백 절차.</p> <p>3. 유소년 발전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p> <p>a) 각 연령대별 팀간 적정 연차 검토 (각 연령대별 선수단 연차는 2년을 권장함);</p> <p>b) 지속적인 점진적 발전구조로,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p> <p>c) 유소년육성 총괄과 해당 담당자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이 경기의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p> <p>4.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인원은 유소년 선수 보호를 위한 정부, 협회, AFC 및 FIFA가 공표한 어린이 보호, 노동법 및 유소년 선수 보호법과 관련된 현재 국내 정책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p> <p>5.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 조항의 도입을 통해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내 선수들의 필수 및 상호보완의 종합 교육에 대한 책무와 지원을 보여야 한다.:</p> <p>a)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내 등록된 모든 유소년 선수는 국내법에 따른 의무교육과정에 출석 및 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 <p>b) 선수가 지속적으로 축구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교육);</p> <p>c) 모든 선수에게 무료 또는 최소 비용이 아닌 종합 의료 지원 서비스 제공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으로 역할을 지속 수행 할 수 있도록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원치 및 기타 관련 서비스).</p> <p>6.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p> <p>a) 선수 육성 구조 및 진로에 대한 조직도;</p> <p>b) 유소년 육성 총괄 또는 기술이사를 통해 마련된 유소년 팀별 연간훈련계획 및 기술발전계획;</p> <p>c) 최소 필수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선수 육성 체계(기술, 의료, 행정 등)에 관여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 명단;</p> <p>d) 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시설물(훈련, 경기장 시설, 체육관, 강당, 교실, 기숙사 등);</p> <p>e) 재원 (예산배분, 라이선스 신청자의 분담금).</p>		

S.03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계약제결 선수에 대한 의무지원서비스 MEDICAL SUPPORT SERVICES FOR CONTRACTED PLAYERS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에 등록된 모든 선수들에게 종합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p> <p>a) 1군 선수단에 포함되어 경기출전이 가능한 모든 선수에 대한 심혈관검사를 포함한 연간 의료검진;</p> <p>b) 계약된 선수에 대한 종합의료보험 보장.</p>		

S.04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계약제결 코칭스태프에 대한 의무지원서비스 MEDICAL SUPPORT SERVICES FOR CONTRACTED COACHING STAFF	B	B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에 등록된 모든 코칭스태프에게 종합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p> <p>a) 클럽의 1군에 대한 기술적 능력에 관여하는 감독 및 코치 등에 대한 심혈관 검사를 포함한 연간 의료검진;</p> <p>b) 계약된 코칭스태프에 대한 종합의료보험 보장</p> <p>2. 본 기준의 목적을 위해, '코칭스태프'라는 용어는 다음 사람들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코치, GK코치 및 피지컬 코치 		

S.05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유소년 저변확대(풀뿌리) 프로그램 GRASSROOTS PROGRAMMES	B	B
<p>1. 13세 미만 어린이는 저변확대 또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p> <p>2. 라이선스 신청자는 지역사회 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나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p> <p>3. 본 활동은 정식경기장을 4등분하여 5:5 경기를 진행하며, 최소 4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해야 한다.</p> <p>4. 저변 확대 활동은 6~12세 어린이들 대상으로하는 AFC의 철학과 일치해야 한다.</p> <p>5. 본 프로그램은 회원 협회의 담당 부서, 교육부, 후원사 또는 기타 관계기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AFC 저변확대구성 정책 문서(AFC Grassroots Framework Policy document)를 참고가능하다.</p>		

S.06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교육프로그램 EDUCATIONAL PROGRAMMES	B	B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선수 및 모든 기술지도 스태프가 1군 선수들이 다음의 과정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a) 스포츠 청렴성 (부정방지); b) FIFA 경기규칙; c) 도핑방지; d) AFC / 연맹이 요구하는 기타 사안. 2. 본 과정 또는 행사는 라이선스가 발급되는 시즌의 개막 전 연 단위로 라이선스 신청자, 협회, 연맹 또는 라이선스 신청자/연맹과 공동으로 제3자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본 기준은 라이선스 신청자가 해당 인원들이 과정 또는 행사에 참석했음을 증빙할 수 있을 때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S.07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사회공헌활동(CSR) 프로그램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ROGRAMMES	C	C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과 축구를 홍보하고, 축구와 사회 내 현안을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라이선스 신청자, 협회, 연맹, AFC 및 FIFA에 의해 공표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을 용이하게 하는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결속한다: a) 팬 기반의 확립 및 확장; b) 자원봉사자 가능인력 확보; c) 지역 사회 내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저변확대 축구 관련 활동, 계획 및 행사 구성; d)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 강화 형성; e) 브랜딩, 머천다이징, 스폰서 및 상업 파트너를 위한 시장기반 형성		

S.08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클럽 유스 아카데미 CLUB YOUTH ACADEMY	C	C
라이선스 신청자가 유소년 발전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및 시설물을 갖추어 클럽 유스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		

S.09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인종 평등 실천 RACIAL EQUALITY PRACTICE	C	C
라이선스 신청자가 축구 종목 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		

10조 (Article 10) : 시설 기준 (INFRASTRUCTURE CRITERIA)

10.1 목적 (OBJECTIVES)

기반시설 기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라이선스 신청자는 AFC 클럽 대회 및 K리그 경기 개최를 위해 팀과 구단 관계자, 관중, VIP, 취재진, 방송 및 상업 파트너에게 적절한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보유해야 한다.
- b) 라이선스 신청자는 선수들의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훈련장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10.2 기준 (CRITERIA)

I.01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대회 개최에 적합한 승인된 경기장 APPROVED STADIUMS FOR COMPETITIONS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AFC 클럽 대회 및 K리그 경기를 개최 가능한 경기장을 보유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a) 소유권을 가진 경기장; 또는 b) 경기장 소유주와 향후 사용에 대한 서면 계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계약서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참가자격을 갖춘 시즌인 다음 시즌의 AFC 및 K리그 경기 시, 사용을 보장해야한다. 2. 경기장은 다음 규정을 명확히 참조하여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AFC / K리그 경기장 규정; 그리고 b) AFC 클럽 대회 / K리그 규정 및 매뉴얼. 3. 경기장은 연맹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경기장이 라이선스 소지자의 연고 도시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1.02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경기장 - 안전 인증서 STADIUM - SAFETY CERTIFICATION	A	A
<p>경기장은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인증서는 국내/지방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며, 안전관련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만일 해당 법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발급자는 경기장 인증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하며, 적절한 기관과의 밀접한 협업을 통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예, 지역 안전 당국, 지역 병원, 소방서, 경찰 등)</p> <p>인증서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p> <p>a) 경기장 구조의 안전 상황 및 건축물의 적합성;</p> <p>b) 권한을 가진 행정당국의 안전/보안 규정에 대한 적합한 공표 문구;</p> <p>c) 경기장 전체 수용인원에 대한 승인 (개별석, 테라스석 및 전체 숫자).</p> <p>관계기관을 통해 발급되는 인증서는 해당 AFC 클럽 대회 및/또는 K리그 시즌의 개막 시점에서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p>		

1.03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경기장 - 승인된 대피 계획서 STADIUM - APPROVED EVACUATION PLAN	A	A
<p>1. 관계기관(예, 안전 및 보안 당국, 유관행정기관 또는 다른 인증된 기관 등)은 해당 법규에 따라 비상상황에서 전체 경기장 내부로부터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대피계획을 승인한다.</p> <p>2.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을 시, 라이선스 발급자는 적절한 민간기구(예, 지역 안전 당국, 지역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대피시간 및 승인기관을 포함한 대피계획에 대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p> <p>3. 가능 대피 경로를 보여주는 색상으로 표시된 층별 계획도는 경기장 내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p> <p>4. 안전담당관, 안내요원 및 클럽과 경기장 직원에게 대피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p>		

1.04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이용가능한 훈련시설 TRAINING FACILITIES - AVAILABILITY	A	A
<p>라이선스 신청자는 연중 훈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p> <p>a) 자체 훈련시설의 보유; 또는</p> <p>b) 훈련시설 소유주와의 서면계약서 제출.</p> <p>본 계약은 라이선스 신청자의 산하 모든 팀에 대해 라이선스 기간 내 훈련시설 이용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p>		

1.05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경기장 - 안전 STADIUM - SAFETY	B	B
<p>국내법에 따라, 안전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 법규가 없을 경우, 라이선스 발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규정하고 실행해야한다.:</p> <p>a) 출입구, 비상구, 계단, 문, 복도, 지붕, 모든 공공 및 개별 공간과 실내 등을 포함한 경기장 및 관중석 전체 부분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p> <p>b) 관중석 내 공공복도 및 계단 전체에 있는 관중석 내 모든 출입문은 그라운드로 향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출입구 및 출입구는 경기장 외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밝은 색상(예, 노란색)으로 페인트칠이 되어야 한다. ;</p> <p>c) 모든 공공 통로, 복도, 계단, 문, 출입구 등은 행사 중 관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p> <p>d) 경기장 내 모든 문 및 출입구와 관중석에서 그라운드로 향하는 모든 출입문은 관중석에서 바깥 방향으로 열려있어야 하며, 관중들이 경기장에 있는 동안 잠기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한다. 모든 문 및 출입문은 지정된 전문 안내요원을 통해 긴급 대피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 경로 확보 및 과도한 사용에 대한 감시를 위해 항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불법적인 입장 또는 침입을 막기 위해, 내부에서 누구나 신속하고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각 문 및 출입문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p> <p>어떠한 경우에도 상기 출입문들은 경기장 내 관중들이 있는 시간에는 열쇠로 잠겨서는 안 된다.;</p> <p>e) 낙뢰로부터 경기장의 기타 부분 또는 그라운드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장은 적절한 안전 정지가 설치되어야 한다.;</p> <p>f) 행사 주최자 및 경기장 안전/보안 당국은 경기장 안팎의 관중들과 충분히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내방송설비(확성장비) 및 전광판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의사소통이 반드시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p> <p>g) 티켓 발권 시스템, 관중 검문검색, 분리 방안, 관중 분산 계획,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이 축구경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다루는 안전 및 보안 방안은 화재 시, 정전 시, 또는 기타 상황 발생 시에 맞추어 각각 준비되어야 한다.</p>		

1.06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선수육성을 위한 훈련 시설 - 최소 기반시설 TRAINING FACILITIES FOR PLAYER DEVELOPMENT - MINIMUM INFRASTRUCTURE	B	B
<p>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 시설의 기반시설은 최소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p> <p>a) 실외 훈련 시설;</p> <p>b) 실내 훈련 시설;</p> <p>c) 선수대기실;</p> <p>d) 의료실 또는 훈련장 내 즉각적인 응급처치 시설.</p>		

1.07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경기장 - 그라운드 수칙 STADIUM - GROUND RULES	B	B
<p>각 경기장은 경기장 그라운드 수칙을 갖추어야 하고, 관중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장 내 이를 부착해야 한다. 본 규정은 최소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입장 권리; b) 행사 포기 및 연기; c) 그라운드 난입, 이물질 투척, 저속한 또는 과도한 욕설, 인종차별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기술; d) 흡연, 음주, 화약류 사용, 현수막 등과 관련된 제한 사항; e) 좌석 규칙; f) 경기장에서 퇴장 사유; g) 경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분석. 		

1.08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경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STADIUM - SPECTATOR WITH DISABILITIES	B	B
<p>라이선스 발급자는 장애인 관중 및 동반인원에 대한 좌석 제공 및 안전하고 안락한 수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p>		

1.09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경기장 - 안내표지판 및 방향 안내 STADIUM - SIGNPOSTING AND DIRECTIONS	C	C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장 안팎의 모든 공공 안내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림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2. 명확하고 포괄적인 안내표지판 설치는 경기장 주변, 경기장 진입로, 경기장 전체의 한 지점에서 각기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입장권에 대한 정보는 경기장 안팎에서 제공되는 안내표지판 정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입장권은 발급된 좌석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입장권의 색상 분류는 입장 질서를 도와주며, 질취된 관중소지용 입장권은 입장관중에 대한 안내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관중 안내를 위해 대형 안내도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1조 (Article 11) : 인사 및 행정 기준 (PERSONNEL AND ADMINISTRATIVE CRITERIA)

11.1 목적 (OBJECTIVES)

인사 및 행정 기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라이선스 신청자(클럽)는 전문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b) 라이선스 신청자는 잘 교육된, 노하우 및 경력 등을 보유한 자격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
- c) 1군 및 기타 선수단의 선수들은 자격을 갖춘 지도자에게 훈련받고, 적절한 스태프에게 지원 받는다.

11.2 기준 (CRITERIA)

P.01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구단 사무국 CLUB SECRETARIAT	A	A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행정 업무를 진행할 사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2. 사무실은 전화, 팩스 및 이메일 등 필요한 최소 시설을 갖추어 충분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한다. 3. 라이선스 신청자는 일일 업무 운영에 필요에 따라 충분한 인원의 숙련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P.02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단장 GENERAL MANAGER / CEO	A	A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일일 업무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단장을 임명해야 한다. (클럽운영관련 업무) 2. 해당 임명은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예,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P.03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재무담당관 FINANCE OFFICER	A	A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재정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재무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2. 재무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공인회계사 증명서; 또는 b)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관 증명서; 또는 c) 최소 3년 이상의 재무분야 실무 경력을 통해 라이선스 발급자로부터 '자격인증서'를 취득. 		

P.04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안전담당관 SECURITY OFFICER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안전 및 보안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갖는 안전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2. 안전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경찰 또는 국내법에 따른 경호인력 자격증; 또는 b) 연맹 또는 지방인정기관에 의해 발급된 안전 및 보안 관련 세부 과정에 대한 수료증; 또는 c)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과 연맹의 안전 및 보안 관련 세부 과정 참석을 통해 라이선스 발급자로부터 승인된 '자격인증서'		

P.05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언론담당관 MEDIA OFFICER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언론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갖는 언론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2. 언론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언론학 분야 학위; b) 연맹으로부터 인정된 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언론담당자 교육과정 수료; c)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 및 라이선스 발급자로부터 승인된 '자격 인증서'.		

P.06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주치의 MEDICAL DOCTOR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경기 및 훈련 중 의료지원 및 도핑예방에 대한 책임을 갖는 주치의를 1명 이상을 임명해야 한다. 2. 주치의의 자격증은 해당 국내 보건당국의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주치의는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P.07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훈련 및 경기 중 1군 선수의 치료 및 마사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 물리치료사를 1명 이상을 임명해야 한다. 2. 물리치료사의 자격증은 국내 해당 보건당국의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물리치료사는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P.08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1군 감독 FIRST TEAM HEAD COACH	P	P
1. 라이선스 신청자는 1군의 축구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감독을 임명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1군 감독은 클럽의 후보/육성 선수단에도 관여해야 한다. 2. 1군 감독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 AFC가 규정한 지도자 최소 자격 요건(Minimum Coaching Requirements, MCR) 이상의 자격증 소지. 현재 MCR은 AFC "P"급 지도자 자격증 또는 협회가 승인하는 상응하는 자격증이 기준이 된다. b) K리그 감독은 최소 AFC "P"급 지도자 자격증 이상을 소지해야한다. c) 1군팀 감독이 상기 a)에 따라 정의된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RECC(Recognition of Experience and Current Competence) 규정에 따라 AFC가 발급하는 '경력 및 현재 자격 인증서'를 소지해야한다. ; d) 상기 a)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중이어야 한다. 3. 감독은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직책이 부여되어야 한다.		

P.09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1군 코치 ASSISTANT COACH OF FIRST SQUAD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1군의 축구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해 감독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클럽의 후보/육성 선수단을 지도할 수 있는 코치를 임명해야 한다. 2. 1군 코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 AFC가 규정한 지도자 최소 자격 요건(MCR) 이상의 자격증 소지. 현재 MCR은 AFC A 지도자 자격증 또는 협회가 승인하는 상응하는 자격증이 기준이 된다.; b) 1군팀 코치가 상기 a)에 따라 정의된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RECC 규정에 따라 AFC가 발급하는 '경력 및 현재 자격 인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 c) 상기 a)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중이어야 한다. 3. 감독은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직책이 부여되어야 한다.		

P.10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유소년 육성 총괄 책임자 HEAD OF YOUTH DEVELOPMENT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YDP)을 포함해 유소년 육성 분야의 모든 면의 관리 및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유소년 육성 총괄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2. 유소년 육성 총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 AFC "A" 지도자 자격증 또는 협회가 승인하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b) 상기 a)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중이어야 한다.; c) 구체적인 유소년 지도 경력 및 유소년 선수의 지도 및 관리와 관련된 추가 증명서/자격증; d)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활동, 역할 및 책임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뛰어난 관리 및 행정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3. 유소년 육성 총괄 책임자(HYD)는 회원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직책이 부여되어야 한다.		

P.11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유소년 코치 YOUTH COACHES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각 연령대별 유소년팀에 대한 축구 전반을 책임지는 유소년 코치를 임명해야 한다. 2. 최소 1명 이상의 유소년 코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 AFC "B" 지도자 자격증 또는 협회가 승인하는 상응하는 자격증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b) 구체적인 유소년 지도 경력 및 유소년 선수의 지도 및 관리와 관련된 추가 증명서/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c)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엘리트 유소년 선수의 육성을 위한 기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3. 나머지 유소년 지도자는 협회가 규정한 최소 지도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AFC "C" 지도자 자격증 이상 또는 협회가 승인하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4. 유소년 지도자는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직책이 부여되어야 한다.		

P.12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안전 및 보안 준비 - 진행요원 배치 SAFETY AND SECURITY ORGANISATION - STEWARDING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홈 경기시의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자격을 갖춘 진행요원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진행요원의 고용; 또는 b) 경기장 소유자 또는 외부업체와 진행요원 제공에 대한 서면 계약 체결		

P.13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권리, 책임 및 의무 RIGHT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	A
1. P.01부터 P.12까지 서술된 라이선스 신청자의 인력의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은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P.14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라이선싱 시즌 중 직무 대체 DUTY OF REPLACEMENT DURING THE LICENSING SEASON	A	A
1. 라이선싱 시즌 중 기준 P.01부터 P.12에 규정된 직무의 공백이 생긴 경우, 라이선스 소지자는 최대 60일 이내에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이 이를 인계받아야 한다. 2. 만일 일부 직무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경우, 라이선스 발급자는 해당 인원이 의학적으로 여전히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경우에 한해 60일을 연장해줄 수 있다. 3. 공석의 발생 및 대체는 해당 상황 발생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P.15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DUTY TO NOTIFY SIGNIFICANT CHANGES	A	A
기준 P.01에서 P.13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라이선싱 서류 제출 이후, 기준에 제출한 정보와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 7일 이내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P.16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법률 고문 LEGAL ADVISOR	C	C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신청자의 제반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 법률 고문(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임명이 권장된다. 2. 법률 고문은 필요한 법률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P.17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클럽 기술이사 CLUB TECHNICAL DIRECTOR	C	C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클럽 기술이사를 고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2. 기술이사는 해당 기술 자격증/인증서 (권장사항 - 최소 AFC "A" 지도자 자격증)를 소지해야 하며, 프로클럽 등에서의 폭넓은 선수 및 업무경력 또는 선수, 지도자, 관리직 또는 고문 등으로서 클럽의 구 성원으로 오랜시간 근무한 경력과 같은 추가 자격사항이 요구된다. 3. 기술이사는 뛰어난 관리 능력, 예측능력 및 클럽의 기량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뛰어난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기술이사는 최소한 다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a) 클럽 철학의 수립 및 실행; b) 유소년 및 선수 육성 구조 및 프로그램 마련; c) 기술(기량) 기준 유지 및 강화 확립; d) 모든 기술 및 발전 프로그램의 평가 및 관찰; e) 우수 선수의 스카우팅 ; f) 클럽의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g) 지도자 및 선수 스카우터의 채용 및 관리; h) 경기분석과정의 관리.		

P.18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1군 골키퍼코치 FIRST TEAM GOALKEEPER COACH	C	C
1. 라이선스 신청자는 1군 선수단 내 자격을 갖춘 골키퍼를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한다. 2. GK코치는 AFC가 규정한 지도자 최소 자격 기준(MCR)을 갖추어야 한다..		

P.19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1군 피트니스코치 FIRST TEAM FITNESS COACH	C	C
1. 라이선스 신청자는 1군 선수단 내 자격을 갖춘 골키퍼를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한다. 2. GK코치는 AFC가 규정한 지도자 최소 자격 기준(MCR)을 갖추어야 한다.		

12조 (Article 12) : 범무기준 (LEGAL CRITERIA)

12.1 소개 (INTRODUCTION)

아래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는 최소 범무 기준이다.

12.2 기준 (CRITERIA)

L.01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AFC 클럽대회 및 K리그 참가에 대한 서약서 DECLARATION IN RESPECT OF THE PARTICIPATION IN AFC CLUB COMPETITIONS AND K LEAGUE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적으로 유효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a) FIFA, AFC, 협회 및 연맹의 정관, 규칙, 규정 및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인지한다.; b) 국제적인 차원, 특히 FIFA 및 AFC와 연루된 분쟁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스위스 로잔 소재)의 독점 관할권을 인정한다.; c) FIFA 및 AFC 정관에 따라 일반 법원으로서의 항소는 금지됨을 인정한다; d) 국내대회의 경우, 협회로부터 승인 및 인정받은 대회를 출전한다. (예, K리그, FA컵 등); e) 국제대회의 경우, AFC 및 FIFA로부터 승인 및 인정받은 대회를 출전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본 조항은 친선경기와는 무관하다.; f) 국내 클럽라이선싱 규정의 조항 및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따르는 것을 동의한다.; g) 모든 제출서류는 완전히 갖추어져있으며 정확해야 한다; h) 결정권이 있는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서류 검토 및 정보 수집과 더불어, 항소 절차 시, 기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국내법에 따른 사설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i) AFC가 국내 수준의 평가 절차 및 의사결정 검토를 위한 준수성감사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지한다; j) AFC가 국내 수준의 준수성감사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 FIFA가 국내 수준의 평가 절차 및 의사결정 검토를 위한 준수성감사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지한다. 2. 본 서약서는 라이선스 발급자의 해당 제출 마감일 3개월 이내에 공인된 서명을 통해 작성완료되어야 한다.		

L.02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법적서류 LEGAL DOCUMENTS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현재 회사 협약, 사규,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회사 관리에 대한 문서의 사본; b) 라이선스 신청자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법인'임을 증명하는 등기소 등본; i. 법인명; ii. 본사 주소; iii. 법인 형태; iv. 공인된 서명자 명단; v. 서명형태 (개별서명, 공동서명 등). c) (해당 시) 협회 산하 대회 참가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신청자와 관련 구성단체간 협약서.		

L.03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클럽의 소유권 및 지배권 OWNERSHIP AND CONTROL OF CLUBS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의 소유권 및 지배 방식을 기술한 법적으로 유효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수립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p> <p>운영, 행정 및 클럽의 스포츠적 성과에 자연인 또는 법률인이 아래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p> <p>a)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활동에 개인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증권 및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p> <p>b)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주주 투표권의 다수를 차지;</p> <p>c)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행정, 운영 또는 관리 기구의 구성원 다수를 임명하거나 해고하는 권리;</p> <p>d) 문제가 되는 클럽의 주주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주주들의 투표권 다수를 단독으로 통제;</p> <p>e)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구성원;</p> <p>f)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및 스포츠적 성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이라도 관여;</p> <p>g)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및 스포츠적 성과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이라도 보유.</p> <p>2. 본 서약서는 라이선스 발급자의 해당 제출 마감일 3개월 이내에 공인된 서명을 통해 작성완료되어야 한다.</p>		

L.04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프로선수와의 서면계약서 WRITTEN CONTRACT WITH PROFESSIONAL PLAYERS	A	A
<p>모든 라이선스 신청자의 프로선수는 'FIFA 선수자격과 이적에 대한 규정' 내 관련 조항에 따라 라이선스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계약서 내에는 FIFA, AFC, 협회 및 연맹이 요구하는 모든 주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p>		

L.05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선수 및 스태프에 대한 징계 절차 및 행동 규범 DISCIPLINARY PROCEDURE AND CODE OF CONDUCT FOR PLAYERS AND OFFICIALS	C	C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국내법, FIFA, AFC, 협회 및 연맹의 정관에 따라 선수 및 스태프에 대한 법적으로 유효한 행동 규범을 마련할 것이 권장된다.</p> <p>2. 행동규범은 행동규범, 클럽 규칙, 클럽 규정 위반 시 법적으로 유효한 징계 규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며, 클럽의 결정은 기소된 후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p>		

13조 (Article 13) : 재무 기준 (FINANCIAL CRITERIA)

13.1 소개 (INTRODUCTION)

재무기준은 다음과 관련된다.:

- a) 클럽의 재무 성과 및 상태에 대한 역사적 재무정보; 그리고
- b) 클럽의 장래의 전망에 대한 미래 재무 정보.

재무기준의 충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역사적 재무 정보는 국내 회계실무의 필요조건을 기초로 준비되어야 한다.

13.2 보고기간 및 형식 (REPORTING PERIOD AND FORMAT)

필수 보고 기간, 보고 및 회계 형식의 최소 요건과 다음 각 기준의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AFC 클럽라이선싱 매뉴얼' 6장을 참고하면 된다.

13.3 기준 (CRITERIA)

역사적 재무 정보 (HISTORIC FINANCIAL INFORMATION)

F.01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 ANNUAL FINANCIAL STATEMENTS - AUDITED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의 법적 구조와 관계없이, 주식회사에 대한 국내법을 기초로 결산재무제표가 준비되어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p> <p>2. 결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대차대조표; b. 손익계산서; c. 현금흐름표; d. 주요회계정책의 요약물 포함한 주석; e. 비고(설명문); 및 f. 경영진에 의한 재무검토. <p>3. 결산재무제표는 AFC 클럽라이선싱 매뉴얼에 규정된 회계원칙 및 최소공시의무를 충족해야 한다.</p> <p>4. 만일 회계감사 받은 결산재무제표가 AFC 클럽라이선싱 매뉴얼에 규정된 회계원칙 및 최소공시의무를 충족한 경우, 추가 보충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p> <p>5. 만일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재무제표가 AFC 클럽라이선싱 매뉴얼에 규정된 회계원칙 및 최소공시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정보가 라이선스 신청자를 통해 준비되고, 회계감사관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p>		

F.02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검토된 반기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INTERIM PERIOD - REVIEWED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의 법적 마감일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클럽 명단의 AFC 제출 마감일' 보다 6개월 이상 앞서는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는 반기 기간을 다루는 추가 재무제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p> <p>2. 반기 재무제표를 준비 및 제출한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클럽 리스트의 AFC 제출 마감일' 보다 앞선 6개월 이내까지의 반기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관을 통한 검토 및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p> <p>3. 반기 재무제표는 AFC 클럽라이선싱 매뉴얼에 규정된 회계원칙 및 최소공시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p>		

F.03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선수이적을 통해 발생한 타 축구클럽에 대한 지급금 미연제 NO PAYABLES OVERDUE TOWARDS FOOTBALL CLUBS ARISING FROM TRANSFER ACTIVITIES	A	A
라이선스 신청자는 올해 8월 31일까지 채권자와 양자 합의에 의해 양 구단간 완전한 합의 또는 지급일 연기 등이 이루어졌거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분쟁이 주무관청에 접수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라이선스를 받게되는 시즌 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선수이적 관련 활동을 통해 발생한 타 축구클럽에 대한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한다.		

F.04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피고용인 및 사회보장기관/국세청 등에 대한 지급금 미연제 NO PAYABLES OVERDUE TOWARDS EMPLOYEES AND SOCIAL / TAX AUTHORITIES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올해 8월 31일까지 채권자와 양자 합의에 의해 양자간 완전한 합의, 지급일 연기 등이 이루어졌거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분쟁이 주무관청에 접수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라이선스를 받게되는 시즌 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전현직 피고용인에 대한 계약 및 법적 의무와 관련된 피고용인, 사회보장기구/국세청에 대한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한다.</p> <p>2. "피고용인" 용어는 최소 다음을 포함한다.:</p> <p>a) 적절한 FIFA 선수 자격과 이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모든 프로선수; 및</p> <p>b) AFC 클럽라이선싱규정 내 명시된 행정적, 기술적, 의료 및 안전 담당자</p>		

F.05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라이선싱 결정전 진술서 WRITTEN REPRESENTATIONS PRIOR TO THE LICENSING DECISION	A	A
<p>1. FIB에 의해 라이선싱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의 시작 7일전 이내,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2. 진술서는 특정 사건 또는 주요 경제적으로 중요한 상황 발생으로 직전 회계감사된 결산 재무제표 또는 반기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날짜 이후 라이선스 신청자의 재무 상황에 불리한 영향력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진술해야 한다. (해당 시).</p>		

미래 재무 정보 (FUTURE FINANCIAL INFORMATION)

F.06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미래재무정보 FUTURE FINANCIAL INFORMATION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아래 2단락 내 규정된 지표 중 위반이 있을 경우,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라이선스 시즌이 끝날 때 까지 구단운영에 대한 현상 유지가 가능함을 설명하기 위해 미래 재무 정보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p> <p>2. 라이선스 신청자는 지표1 또는 지표2에 서술된 조건과 관련하여 특이점이 확인될 경우, 이는 해당 지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p> <p>a) 지표1 : 계속기업 기준 F.01(연간 재무제표) 및 F.02(반기 재무제표)에 따라 제출된 결산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 감사보고서 내 계속기업과 관련해 단서가 붙는 의견/결론 또는 관련 문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p> <p>b) 지표2 : 역자산 기준 F.01에 따라 제출된 결산 재무제표(필요 시, 추가 정보를 포함)는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내 포함된 비교수치에 대하여 악화된 순부채 상태를 공표해야하며, 또는 기준 F.02에 따라 제출된 반기 재무제표(필요 시, 추가 정보를 포함)는 직전 법정마감일 시점의 비교수치에 대하여 악화된 순부채 상태를 공표해야 한다.</p> <p>3. 미래 재무 정보는 결산 재무제표의 법적 마감일 바로 직후 시작되는 기간 또는 해당 시, 반기 재무제표 내 대차대조표의 날짜 직후 시작되는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라이선스 시즌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p> <p>4. 미래 재무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p> <p>a) 직전 회계연도 및 반기(해당 시)의 비교수치를 포함한 예산된 손익계산서 ;</p> <p>b) 직전 회계연도 및 반기(해당 시)의 비교수치를 포함한 예산된 현금유동성(현금흐름);</p> <p>c) 예산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와 미래 재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대비한 주요 추정치(역사적 재무 및 기타 정보의 관련 측면을 참고로 한)의 각 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주석.</p> <p>5. 미래재무정보는 최소 분기별로 준비되어야 한다.</p> <p>6. 미래재무정보는 회계감사된 결산재무제표를 기초로 준비되어야 하며 결산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방침을 따라야 한다. 단, 가장 최근 결산 재무제표의 날짜 이후 다음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위한 회계방침 변경은 제외하며, 이 경우 세부 변경내용이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p> <p>7. 미래재무정보는 AFC 클럽 라이선싱 매뉴얼에 설명된 최소 공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명확한 설명 또는 생략에 따라 미래재무정보를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 추가 항목 또는 주석을 포함해야 한다.</p> <p>8. 추정치를 기초로하는 미래재무정보는 경영진을 통해 승인되어야 하며, 간단한 설명 및 보고 실체의 집 행부를 대표하는 서명 등의 형태로 증빙되어야 한다.</p>		

후속 정보 (SUBSEQUENT INFORMATION)

F.07 및 F.08 기준은 라이선싱 결정 이후에도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F.07 기준 (후속 사건 통지 의무)는 모든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F.08 기준(미래재무정보의 최신화 의무)는 하나 이상의 지표 위반이 확인된 라이선스 소지자에게만 적용된다. 두 기준 클럽이 대회참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전체 시즌 동안 클럽의 개선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F.07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후속 사건 통지 의무 DUTY TO NOTIFY SUBSEQUENT EVENTS	B	B
<p>1.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라이선싱 결정 후, 라이선스 소지자는 적어도 라이선스가 승인된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현상유지를 지속할 수 있는 라이선스 소지자의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후속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즉각 이를 통보해야 한다.</p> <p>2. 본 기준의 준수는 다음 라이선싱 주기에 있어서 라이선스 발급자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p>		

F.08 기준 설명	AFC 기준	K리그 기준
미래재무정보의 최신화 의무 DUTY TO UPDATE FUTURE FINANCIAL INFORMATION	B	B
<p>1. 라이선스 소지자가 지표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한 이후, 라이선스 소지자는 미래재무정보의 수정본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준 F.06에 따라 준비) 추가적으로, 준비된 정보는 변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 실제 수치와 예산간 비교를 포함해야 한다. 미래재무정보는 수정본은 최소 6개월 단위로 준비되어야 한다.</p> <p>2. 최신화된 미래재무정보는 AFC 클럽라이선싱에 규정된 최소 공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3. 본 기준의 준수는 다음 라이선스 주기에 있어서 라이선스 발급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p>		

14조 (Article 14) : 최종조항 (FINAL PROVISIONS)

13.1 별첨 (ANNEXES)

현 규정의 모든 별첨은 본 규정과 통합된 형태로 구성된다.

13.2 준수성 감사 (COMPLIANCE AUDITS)

13.2.1. AFC와 연맹은 라이선스 발급자 및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의 준수성감사를 향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3.2.2. 준수성감사는 라이선스 발급자 뿐만아니라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가 본 규정 내 정의된 의무를 이행하고, 라이선스 발급자의 최종 결정 시기에 라이선스가 올바르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그 목표로 한다.

13.2.3. 준수성감사를 위해, AFC 클럽라이선싱 규정과 국내 클럽라이선싱 규정간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AFC 클럽라이선싱 규정이 권위를 갖는다.

13.3 징계 절차 (DISCIPLINARY PROCEDURES)

13.3.1. 본 규정의 위반 시, AFC 징계규정에 따라 AFC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3.3.2. 본 규정의 위반 시, 연맹 상벌규정에 따라 연맹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3.4 실행 조항 (IMPLEMENTING PROVISIONS)

13.4.1. 연맹은 지시사항으로 본 규정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 조항을 채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13.5 명문화 되지 않는 사항 (MATTERS NOT PROVIDED FOR)

13.5.1.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의 영문판과 국문판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문판이 권위를 갖는 문서가 된다.

13.5.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최종 결정권을 갖는 K리그 이사회가 결정하며, 연맹 정관, 규정 및 클럽 라이선싱 규정과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검토한다.

13.6 승인 (RATIFICATION)

13.6.1. 본 규정은 2018년 1월 15일 연맹 이사회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즉시 효력을 가진다.

4부 (PART FOUR)

별첨 1 (ANNEX 1) :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한 예외 정책

(EXCEPTIONS POLICY FOR AFC CLUB COMPETITIONS)

A. 원칙 (PRINCIPLE)

1.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AFC CLA)는 규정 5.5.1조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 a. 의사결정기구 또는 규정 6.4조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최소 요건을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미적용;
 - b. 규정 8조에 정의된 평가절차에 대한 최소 요건을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미적용;
 - c. 규정 8.4조에 정의된 최소 평가절차를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미적용;
 - d. 라이선스 신청자의 법인형태 또는 기업구조의 변경 시 경우에 따라 규정 7.2.2조에 정의된 2년 규칙 (Two year rule)을 미적용;
 - e. 3부에 정의된 일부 기준을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미적용
 - f. 3부에 정의된 기준의 분류 또는 기준의 실행에 대한 도입 기간의 연장
2. 조항 a), b), c), d) 및 f)와 관련된 예외는 협회에 인정되어 등록된 모든 클럽에 적용될 수 있으며, AFC 클럽대회 참가를 위한 라이선싱 신청 제출 시 적용될 수 있다. 조항 d)와 관련된 예외는 라이선스를 신청한 개별 클럽에 인정된다.
3. 원칙적으로 예외는 한 시즌의 기간만 인정된다. 특정 상황 하에서 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AFC 회원협회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예외의 갱신은 신규 요청 시 가능하다.

B. 절차 (THE PROCESS)

1.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는 예외 요청에 대한 1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2. 예외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AFC 회원협회는 조항 A(1) (a,b, c, e 및 f) 내 정의된 항목에 대한 예외를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에 주요평가절차의 시작 6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4. 조항 A(1) (d) 내 정의된 항목에 대한 예외는 항시 제출할 수 있다. 산하 클럽의 개편 또는 재정비를 통보받은 라이선스 발급자는 이를 인지한 즉시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에 적절히 통보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5.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는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량권을 적용할 수 있다.
6. 협회의 영토 내 축구의 위치와 상황은 예외 적용 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한다.
 - a) 영토의 크기, 인구, 지리, 경제적 배경;
 - b) 협회의 크기 (클럽 수, 등록된 팀 및 선수 수, 협회의 행정 크기 및 수준 등);
 - c) 축구 수준 (프로, 준프로 또는 아마추어 클럽);
 - d) 영토 및 잠재시장 내 스포츠로서 축구의 위치 (평균관중수, 중계방송 시장, 스폰서십, 잠재수익, 등.);
 - e) AFC 및 FIFA 순위;
 - f) 협회 내 스타디움 보유 현황 (클럽, 시, 지역사회 등);
 - g) 국내 문체부를 포함한 국가, 지역 또는 지방당국의 지원(재정적 또는 기타).
7. 결정사항은 협회로 전달되어진다. 해당 결정은 근거를 서술하여 서면으로 전달된다. 연맹은 협회로부터 수신 후 이를 해당 라이선스 신청자 전체에게 전달해야 한다.
8.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한 항소는 AFC 정관 내 정해진 관련 조항에 따라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의 결정 이전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별첨 2 (ANNEX 2) : K리그 참가를 위한 예외 정책 (EXCEPTIONS POLICY FOR K LEAGUE)

A. 원칙 (Principle)

1. 본 예외 정책은 K리그에 한해 적용된다.
2. 연맹은 5.5.2조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로 다음 사안에 대한 예외를 승인한다 :
 - a)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규정 8조에 정의된 주요평가절차와 관련된 최소 요건의 미준수 시;
 - b)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규정 8.3조에 정의된 최소 평가절차의 미준수 시;
 - c)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3부 내 정의된 특정 기준의 미준수 시 ;
 - d) 3부 내 정의된 기준의 실행 또는 기준의 범주에 대한 도입 시기의 연장.
3. a), b), d) 항목과 관련된 예외는 K리그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 신청을 제출한 연맹에 등록된 모든 클럽에게 허용된다. c)항과 관련된 예외는 라이선스를 신청한 개별 클럽에게 허용된다.
4. 원칙적으로 예외는 한 시즌의 기간만 인정된다. 특정 상황 하에서 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클럽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예외의 갱신은 신규 요청 시 가능하다.

B. 절차 (THE PROCESS)

1. FIB는 예외 요청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이다.
2. 예외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클럽은 조항 A(2) (a,b, c, d) 내 정의된 항목에 대한 예외를 클럽 라이선싱 매니저에게 주요평가절차의 시작 6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4. FIB는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량권을 적용할 수 있다.
6. 결정사항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해당 결정은 사유를 서술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7. FIB의 결정에 대해 AB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AB의 결정은 최종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별첨 3 (ANNEX 3) -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신청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AFC CLUB COMPETITIONS)

1. 클럽 라이선싱의 임시 신청에 대한 적용가능한 최소 기준은 본 규정의 3부 내 내용과 동일하다.
2. 연맹은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시즌의 직전년도 8월 31일까지 해당 클럽의 이름을 명시한 임시 신청 요청을 서면으로 AFC에 통보해야 한다.
3. 연맹은 해당 클럽에게 국내 수준에서 임시 신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연맹은 임시 신청 절차에 대해 해당 클럽을 준비시켜야 한다.
4. 해당 클럽은 필요한 서류상 증빙자료를 연맹에 제출해야 하며, 연맹은 본 규정 3부 내 최소 기준과 관련하여 클럽을 평가해야 한다.
5. 연맹은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시즌의 직전년도 9월 30일까지 영문으로 작성된 다음 서류를 AFC로 제출해야 한다. :
 - a) 해당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 발급을 요청하는 클럽이 정식으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서면 신청서를 AFC 참가팀 관리 기구(AFC Entry Control Body)에게 제출 :
 - i. 클럽명 및 주소 ;
 - ii. 신청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클럽의 정체성;
 - iii. 관련 규정을 참조한 서면 주장;
 - iv. 연맹에 제출한 모든 서류상 증빙 자료;
 - b) 평가를 근거로한 라이선스 발급자의 추천서 (클럽을 평가한 담당자의 이름 및 일자 포함);
 - c) AFC가 요청하는 기타 서류
6. 본 특별 절차 중 해당 클럽이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대회성적을 얻지 못한 경우, 연맹은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하며, 해당 절차는 추가 결정없이 마무리된다. 그렇게 마무리된 절차는 이후 단계에서 재개될 수 없다.

별첨 4 (ANNEX 4) : K리그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신청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K LEAGUE)

1. 본 임시 신청은 신규 가맹클럽의 K리그2(챌린지 / 2부 리그) 참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본 신청은 신생 팀의 첫 번째 시즌에만 적용된다.
2. 규정 7.6조에 명시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신청에 대한 적용 가능한 최소 기준은 본 규정의 3부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CLA는 7.6.1.1조를 적용한다.
3. CLA는 신생 신규 가맹 클럽 또는 신규 가맹을 희망하는 클럽에게 늦어도 라이선스 발급 시즌 직전년도 9월 30일까지 해당 클럽에 서면으로 신청을 고지해야 한다.
4. CLA는 해당 클럽에게 임시 절차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공할 책임을 가진다. CLA는 임시 신청 절차에 대해 해당 클럽을 준비시켜야 한다.
5. 해당 클럽은 라이선스 발급 시즌 직전년도의 10월 31일까지 필요한 서류상 증빙자료를 지정된 최소 기준을 통해 클럽을 평가하는 CLA에 제출해야 한다.
6. 의사결정기구(6.4조 참조)는 수신한 서류를 바탕으로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이 확인될 경우 K리그2(챌린지 / 2부 리그) 참가를 승인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클럽 라이선싱 행정팀

www.kleague.com

TEL, 02-2002-0685 | FAX, 02-2002-0671